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불진화용 항공기 조종사의 승무시간 제한 등〉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05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05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산불진화용 항공기 조종사의 승무시간 제한 등(안 제56조 등)	2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221870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29.
3. 회 부 일 : 2026. 4.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의 승무시간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은 비행시간이 장시간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행의 종류를 고려한 규제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산불 진화,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등의 고난도 비행은 항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종사의 비행시간을 제한하거나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난도 비행의 경우에는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일일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하고, 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1호 후단 및 제76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산불진화용 항공기 조종사의 승무시간 제한 등(안 제56조 등)

개정안은 산불 진화,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하루 6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항공기 운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①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① ----- ----- ----- ----- -----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하 이 조에서 “승무시간등”이라 한다)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 <u><후단 신설></u>	1. ----- ----- ----- ----- ----- -----. <u>이 경우 산불을 진화하는 경우,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조종사의 승무시간은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2. (생략) ②·③ (생략) <u><신설></u>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4. (생략) <u><신설></u> 35. ~ 49. (생략) ②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u>제76조의2(조종사의 편성에 대한 제한)</u> <u>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산불을 진화하는 경우,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u>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 ----- ----- ----- ----- ----- ----- ----- ----- -----. 1. ~ 34. (현행과 같음) <u>34의2.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2명 이상의 조종사를 함께 탑승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u> 35. ~ 4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 제56조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소속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 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의 제한기준을 따라야 하며,¹⁾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²⁾

이에 따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연속 24시간 동안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의 경우 최대 승무시간³⁾을 8시간으로, 비행근무

1) 「항공안전법」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①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하 이 조에서 “승무시간등”이라 한다)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

2.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방법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제1항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승무시간(Flight Time)”이란 비행기의 경우 이륙을 목적으로 비행기가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정지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하며, 헬리콥터의 경우 주회전익이 회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주회전익이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8」)

시간⁴⁾은 13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을 하는 헬리콥터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최대 승무시간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 · 비행근무시간 기준 】

(단위: 시간)

운항승무원 편성	최대 승무시간	최대 비행근무시간
기장 1명	8	13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8	13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	12	15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12	16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13	16.5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16	20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	16	20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등 기준(제127조제1항 관련)

【 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을 하는 헬리콥터 운항승무원의 최대 승무시간 기준 】

구분	연속 24시간	연속 3개월	연속 6개월	1년
최대 승무시간	8시간	500시간	800시간	1,400시간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등 기준(제127조제1항 관련)

또한 현행법 제76조는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그 항공기에 운항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우도록 하고,⁵⁾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인명구조 ·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쌍발 헬리콥터의 경우 기장과 기장 외의 조종사를 탑승(2명 이상)시키도록 하고 있으

4)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이란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8」)

5) 「항공안전법」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그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워야 한다.

나,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로서 해당 항공기의 비행교범에서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2명의 조종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조종사 1명**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 】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태워야 할 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항공기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운항승무원

항공기	탑승시켜야 할 운항승무원
비행교범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조종사 (기장과 기장 외의 조종사)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	
인명구조,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쌍발 헬리콥터	
구조상 단독으로 발동기 및 기체를 완전히 취급할 수 없는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
법 제51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고 비행하는 항공기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을 가진 조종사 1명
착륙하지 아니하고 55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을 비행하는 항공기(비행 중 상시 지상표지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관성항법장치 또는 정밀 도플러 레이더 장치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조종사 및 항공사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해당 항공기의 비행교범에서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2명의 조종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조종사 1명**으로 운항할 수 있다.

-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가. 관광비행에 사용되는 헬리콥터
나. 가목 외에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
-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

다만, 최근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하여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례⁶⁾ 등을 고려할 때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비행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최대 승무시간만을 규정하고 있어 승무원 등의 피로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및 운항안전을 위하여 산불 진화와 같이 항공사고의 위험이 높은 고난도 비행은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제한하거나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산불을 진화하는 경우,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난도 비행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하루에 6시간 이하로 단축하고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⁷⁾의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6) 연합뉴스, 「의성서 산불 진화헬기 추락, 조종사 1명 사망…30년된 노후 기종」, 2025.3.26.

7) 안 제91조는 2명 이상의 조종사 탑승 의무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정지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95조, 제96조에 따르면 산불 등 화재 진압 용도의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며, 개정안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제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을 취소·정지할 수 있게됨.

「항공안전법」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개정안에 따라 산불진화 등 특별히 승무원의 피로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최대 승무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고 2인 이상 조종체제를 의무화할 경우, 일반 여객운항에 비하여 조종사의 집중력 소모가 크고 피로 누적이 빠른 고위험 운항 유형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장시간 산불 진화 상황에서의 교대 운항을 통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56조 승무시간 제한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규제는 국가기관등항공기⁸⁾(소방청, 산림청 등)가 아닌 민간

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제1항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제90조를 준용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9조(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및 제5호의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에는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만 해당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15호에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산불 등 화재 진압

8)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산불진화용 헬기 등 항공기사용사업자⁹⁾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산불임무 등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헬기를 임대하는 민간 헬기사용 사업체 업계에 따르면, 연간 군에서 전역 후 민간 업체로 재취업되는 인원은 소수 인원¹⁰⁾으로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조종사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조종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지출 과다소요로 업계의 경영부담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 민간 헬기사용 사업체 조종사 운용 현황 】

구 분			2인 조종	1인 조종	계	비고
2026년 현재	13개 업체	헬기 대수	26대	79대	105대	
		고정 근무	52명	79명	131명	
		교대 근무	16명	24명	40명	
		계	68명	103명	171명	
향후 법률 개정시	13개 업체	헬기 대수	26대	79대	105대	
		고정 근무	52명	158명	210명	79명 추가소요 예상
		교대 근무	16명	48명	64명	24명 추가소요 예상
		계	68명	206명	274명	총 103명 추가소요

※ 자료 : 한국회전익항공사용협회

9)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17.>

15.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사진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15호에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산불 등 화재 진압

6. 수색 및 구조(응급구조 및 환자 이송을 포함한다)

7. 헬리콥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헬리콥터 외부에 건설자재 등을 매달고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총 13개 업체가 소속되어있는 한국회전익항공사용사업자협회에 따르면, 군 전역 조종사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급여나 복지여건이 우수한 공공기관(소방, 산림, 경찰)으로의 재취업을 희망하며, 연간 군에서 전역 후 민간업체로 재취업하는 인원은 5~6명 정도의 소수라는 입장임. 공공기관 정년 퇴직조종사가 민간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고령조종사가 되어도 현실적으로 조종사 구인난으로 고령조종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2인 조종체계가 의무화될 경우 현실적으로 조종사 구인이 어렵다는 입장임.

한편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는 인명구조,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쌍발 헬리콥터의 경우 원칙적으로 2명의 조종사 탑승을 규정하면서, 해당 항공기의 비행교범에서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2명의 조종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조종사 1명으로도 운항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¹¹⁾

관련 업계¹²⁾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별도의 산불진화용 헬기를 보유하지 않고 민간의 산불진화용 헬기(조종사 포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민간 헬기 사용 단가 인상이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1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태워야 할 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항공기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운항승무원

항공기	탑승시켜야 할 운항승무원
비행교범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조종사 (기장과 기장 외의 조종사)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	
인명구조,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쌍발 헬리콥터	
구조상 단독으로 발동기 및 기체를 완전히 취급할 수 없는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
법 제51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고 비행하는 항공기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을 가진 조종사 1명
착륙하지 아니하고 55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을 비행하는 항공기(비행 중 상시 지상표지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관성항법장치 또는 정밀 도플러 레이더 장치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조종사 및 항공사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해당 항공기의 비행교범에서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2명의 조종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조종사 1명으로도 운항할 수 있다.

1.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 가. 관광비행에 사용되는 헬리콥터
 - 나. 가목 외에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의 항공기
2.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

12) 한국회전익항공사용사업자협회

항공기 기종에 따라 구조적으로 2명의 조종사 탑승이 불가능하거나, 형식증명 및 비행교범상 1인 운항을 전제로 항공기가 설계되었거나, 재난·재해현장에서 조종사 수급이나 긴급출동 등으로 인해 예외적인 1인 운항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개정안은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현장 대응이 지연되거나 초기 진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조종사의 최대 승무시간이나 탑승기준 등 기술적·전문적 사항은 운항기준 등의 변화에 따라 신속한 조정이 필요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6시간’ 등 구체적인 수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경우 제도 운영의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유사 사례로서 산불 진화용 항공기를 운영하는 소방청 및 산림청의 항공기 운영 기준을 살펴보면,

소방청의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19항공대의 항공기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하되 구조·구급 및 화재 진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비행시간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¹³⁾

1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항공기의 운항 등) ① 119항공대의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하되, 해상비행·계기비행(計器飛行) 및 긴급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

산림청의 경우 산불진화용으로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헬기는 제조사 매뉴얼 등에 따라 2인의 조종사가 탑승하고,¹⁴⁾ 「산림항공 운항규정」(산림항공본부 훈령)에 따라 화물운반 및 항공방제의 1일 최대 비행시간은 4시간 30분, 2인 조종사 탑승 시 1일 최대 비행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¹⁵⁾ 다만, 재해·재난, 산불 등 긴급운항의 경우에는 산림청과 협의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2인 조종사 탑승을 전제로 조종사의 1일 최대 비행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면서도, 긴급한 재해·재난의 상황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기관등의 항공기 운항기준을 참고하여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비사 1명을 추가로 탑승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1. 21.>

②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조·구급 및 화재 진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비행시간의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15) 「산림항공 운항규정」(산림항공본부 훈령)

3.3.10 최대비행 시간 <개정 '25.6.2>

1. 1일 및 연속 6일 조종사의 최대비행 시간은 아래표와 같다.

구 분	1 일	연속 6일
1인 조종사	4시간 30분	27시간
2인 조종사	8시간	48시간
* 화물운반 및 및 항공방제의 1일 최대비행 시간은 4시간 30분(이동시간 제외)으로 제한 * 단, 재해·재난, 산불 등 긴급운항의 경우는 산림청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3.3.11 소형헬기 운용 <신설 '25.6.2>

1. 소형헬기 임무수행 시 조종사는 2명으로 편성하며 시험비행(기능비행 포함), 지상시운전 등은 1명의 조종사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산불진화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 기관의 여건에 따라 조종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관계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실제 현장 적용 시 승무시간 제한 및 2인 탑승 의무화는 조종사(헬리콥터) 인력부족·수급으로 인한 가용 대수 감소로 산불 진화에 제약이 우려되며, 소형 헬기 등 기체설계상 1인 조종 체계인 기종에 대해서는 2인승 탑승 의무화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한국회전익항공사용사업자협회

법률 개정 시 약 103명의 조종사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사용사업체에서 현재 확보 가능한 조종사는 매년 군·공공기관 퇴직자 5~6명으로 현실적으로 조종사 확보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업체 경영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선진국에서도 임무의 특성과 기체의 설계에 따라 1인 조종을 허용하고 있으며, 추가 조종사 확보 대책 없이 2인 탑승이 의무화될 경우 민간 헬기 사용사업체의 대거 운항정지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산불진화 헬기 투입이 어려워져 국가적 재난 대응시스템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0